

都市計劃에 있어서 그린벨트의 必要性

1. 그린벨트의 沿革과 首都圈計劃

中世都市形態를 分析한 결과, 거의 모든 都市가 閉鎖形 都市로서 保壘 곧 城廓에 의하여 둘러 쌓여진 모양을 갖고 있다. 이것을 오늘날의開放形은 都市形態와는 正反對의 모양으로서, 여기에는 그 만한 理由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外部로 부터 侵入하는 敵을 막기위한 부득이한 措置였었다.

尹 定 變

서울大学校工科大学 教授

目 次

1. 그린벨트(環狀綠地帶)의 沿革과
首都圈計劃
2. 그린벨트의 主된 機能은 都市의
平面拡散을 防止하는데 있다.

이런 都市形態는 비단 西洋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東洋各国 즉, 中国, 日本, 韓國등에서도 이런 모양을 発見할 수 있다. 그러나 銃砲等의 武器의 發達로 그 存在価値가 없어진 保壘는 英国에서 시작된 產業革命의 거센 물결로 都市로 都市로 모여드는 工場에의 流入人口와 함께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環狀道路가 敷設되었던 것이다. 이런 過程을 겪은 代表的 都市는 오스트리아의 “버엔나”이다. 그리하여 都市에 모여든 過剩人口는 環狀道路 밖으로 뻗어 나갔으니 이것이 오늘날 시카고大学의 버지스(Burgess)가 主張한 同心円의 都市패턴의 시초이다. 이렇게 急激히 平面拡散(Sprawl) 한 都市는 近代를 거쳐 現在에 이르기까지 계속 膨脹되 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긴巨大都市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都市問題들, 즉, 上地 및 住宅의 不足, 交通混雜, 上下水道等 公共施設의 不足, 綠地의 荒廃化 등의 施設面의 問題와 아울러 여러가지 社會問題의 起起로 都市는 점점 “自然은 神이 만들었고, 都市는 惡人이 만들었다”는 比喻를 立証하기에 이른것이다. 이런都市가 内包한 심상치 않은 問題들을 곰곰히 생각할 때 우리는 그대로 都市를 放任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對処한 어느手段方法을 研究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巨大都市의 無制限한 膨脹을 抑制하고,巨大都市가 平面膨脹함으로서 周辺의 群小都市를 併合하여 더욱 더 큰 都市広域圈을 形成하는 것을 막아, 소위 都市의 連担化現象(Conurbation)

을 防止하여 綠地로 둘러 쌓인 都市의 自然美와 人工美的 調和를 평할 수 있고 또 이뿐아니라 大氣汚染을 막을 수 있는 役割을 겸하겠금 하는데는 結局 그린벨트(環狀綠地帶)로 都市를 保護하는 方法이 考察된 것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都市의 保護綠地帶(Protection Green)라 불르기도 하고 都市計劃法에서는 開發制限区域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런 그린벨트의 適用은 어느 時代부터 都市計劃에 導入되었는데 그 沿革을 여기서 살펴 보고자 한다.

B, C 13세기 때 Leuitical市나 B, C, 6세기 때 Jerusalem市는 牧草地로 된 그린벨트를 그周辺에 갖 이고 있었고, 1515년 Thomas more의 Utopia 提案에서, 혹은 1817년 Robert Owen이 提案한 共同地域社會(Co-operative Community)에서도 그린벨트案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英国의 에리자베스女王 때부터 英聯邦(Common-wealth)時代까지 런던의 拨散을 막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設置하려는 立法的措置를 講究하였으나 成功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英聯邦內의 濟州에서는 에드레이드(Ade-laide)市나 New Zealand의 都市에는 그린벨트가 適用되었었다.

그러나 本格的인 그린벨트의 始初는 1661년 John Evelyn의 著書에서 提案되어 런던市의 煤煙과 까스를 吸取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런던周辺에 그린벨트를 設置하자는 提議가 있었고, 이어서 1666~67년에 걸친 런던大火災로 大部分의 市街地가 廢墟가 되는 受難을 겪은 후 1902년에 現代的인 意味의 그린벨트 즉, 農耕地帶(agricultural belt)의 提案이 Ebenezer Howard의 著述인 "Garden Cities of tomorrow"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田園都市에서도 특히 Howard는 全市街地를 그面積의 5倍이 상이 되는 農耕地로 둘러 쌓아서 計劃人口의 過剩狀態를 막고, 田園이 가지고 있는 清福을 維持하고, 適正規模의 人

口를 超過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手法으로 提示된 것이다. 이러한 手法은 마치 前述한 保壘로서 都市를 保護하고자 했던 閉鎖型都市를 代身하여, 保壘를 綠地帶로 바꾸어 논 듯한 聯想을 주는 것이다. 여하튼 Howard의 主張대로 런던近郊에 Letchworth와 Welwyn이라는 2개의 田園都市가 実現되었다.

그런데 Green Belt라는 어휘는 英国의 都市計劃家 Rayword Unwin에 의하여 発行된 広域 런던 地域計劃委員會 報告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1935년에 런던市議회는 다른 기관과 함께 런던周辺에 그린벨트를 設置하기 위하여 土地取得에 관한 事業計劃을 發議하였다. 이 결과 런던周辺의 26,500에이커의 土地가 保護綠地帶로서 役割을 하게 되고 土地使用은 大部分이 農耕地로 남게 된 것이다. 世界第2次大戰이 끝난 후, Farshaw와 Abercrombie教授는 都市広域 런던 基本計劃을 政府의 委嘱을 받아 作成하였는데, 여기서 Green belt Ring이란 環狀綠地帶를 提案하고, 1944년에는 이計劃이 公定都市計劃이 되기 위한 法的措置로 都市 및 農村計劃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와 1946년에 新都市法(The New Town act)이 公布되어 다음의 두 가지 目的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都市區域內의 密度의 低下, 都市周辺地域의 綠地帶의 保存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아닌 都市逆流人口의 都市外廓地帶로의 流出인데, 이런 流出人口를 周辺地帶(Outer Country Ring)으로 分集(Recentralization) 시켜, 新都市를 育成하여 セント럴·런던에서 約 40만人을 分散吸收시키는 計劃이다. 当初의 新都市는 人口規模 6만을 目標로 하여 그周辺를 Local 그린벨트로 둘러싸고 新都市와 그것을 둘러싼 農村地帶는 하나의 単位로 考慮된다. 런던自體의 綠地帶 즉, 그린벨트에는 레크리에이션用地를 確保하고 市街地의 連担膨脹을 抑制한다. 이 綠地帶와 다음의 周辺地帶에 대해서는 開發을 許可制로 하고 그許可是該當團體가 아닌 広域의 觀點에서 大地方府이取扱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綠地帶의 指定으로 侵害되는 私權의 問題는 어떻게 다루워졌는가 하면, 먼저 그린벨트의 指定으로 말미암아 受益(Batterment)을 받은 사람은 受益稅를 내야되고, 그反面에 土地投機의 目的에서 綠地帶內에 土地를 所有하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善意의 被害者에 대하여는 適正한 補償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不動產投機抑制稅에 對象이 되는 土地는 마땅히 課稅가 되어야 한다. 1938년의 Green-Belt法에 의하여 買収된 部分을 包含하여 幅 8km에 따라서 計劃되어 있고, 土地所有者에 의한 開發을 抑制하기 위하여 多額의 補償金도 支出되어 保障되어 있고, 最近에 다시 外側에 그린벨트를 拡大하여 幅員을倍加할 것을 檢討하고 있다.

以上에서 훑어 본 大伦敦計劃(Greater London Plan)은 周辺地帶의 新都市建設이 元來의 目的인 自給自足(self-contained) 된 都市로 發展하지 못하고 여전히 母都市 런던으로 流入되는 人口가 많아서 結局은 新都市가 住居都市 즉 Bed town으로 低落되어 失敗로 돌아 갔다는 批判도 있지만, 이런 問題는 短時日内에 解決될 수 없고 역시 時日이 経過되어야 그成功如否가 판가름 되리라 본다.

다음은 日本首都圈整備計劃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日本에서 首都圈整備計劃이 本格化된 것은 戰后 10년을 지난 1956년의 일이며, 首都의 過大化를 防止하고 首都圈의 秩序 있는 發展을 기하기 위하여 首都圈整備法을 制定하고 首都圈整備委員會를 設立한 때부터였다.

現行의 首都圈整備計劃은 半径 約 100km의 区域을 對象으로 하여 그것을 “既成市街地” “近郊地帶” “周辺地域”的 3個区域으로 区分하여 大體로 다음과 같이立案하였다.

a. 既成市街地—東京都区部와 川崎, 横浜, 川口, 三鷹, 武藏野의 5個市에 걸친 連坦母都市 区域이며

그중 都市内 区部의 綠地地域과 川崎, 横浜의 綠地地域을 除外한 地域은 当初에 그人口趨勢를 그대로 放置하면 1.610萬人에 達할 것이라고 予想했기 때문에 그空間內의 適正取容人口로 認定되는 1.225萬人으로 人口規模을 阻止하기 위하여 그 差額人口 385萬人 중 65萬人은 首都圈의 地方 振興에 의하여, 320萬人은 首都圈內의 衛星都市育成에 의하여, 分散定着시킬 것을 企図하고 既成市街地의 整備는 目標人口 1.225萬人에 對應하여 土地利用計劃, 公共施設配置計劃을 立案하였다.

또 이既成市街地内에서는 首都圈의 “既成市街地에 있어서의 工場等의 制限에 관한 法律”을 制定하여 1959年부터 工場이나 學校의 新設, 拡張을 抑制하기 始作하였다.

b. 近郊地帶—既成市街地를 둘러싼 幅 約 10km, 全面積 約 17만 ha의 地域을 綠地帶로 設定하여 中心市街地의 過度한 連坦膨脹을 抑制하고 그自然環境을 保護함으로써 公園綠地, 레크리에이션用地로 하고 또 生鮮 蔬菜의 供給등의 機能을 擔當케 하겠금 意圖되었다. 그러나 이近郊地帶에 관한 具体的인 對策은 講究되지 않았고, 이地帶가 온전한 그린벨트의 役割를 하기 위해서는 私有地에 대한 補償 혹은 買収등의 措置 없이 用途指定만 하였기 때문에 首都圈整備委員會에서도 이地帶의 保全이 困難하다고 判定하고 一部 發展를 許容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名稱도 近郊地帶 代身에 發展制限区域으로 바꾸었다고 알고 있다.

c. 周辺地域—近郊地帶外側의 周辺地域内에 있어서는 衛星都市를 育成하여前述한 바와 같은 320萬人을 分散定着시킬 것을 目標로 하였다. 이目標를 達成하는 方案으로 首都圈市街地 發展区域整備法에 의하여 工業團地造成事業에 대해서 土地收用权을 賦與하는 制度가 設定되어 있고, 또 이제 까지에 40~50km 圈내에 7個所, 그보다 더 遠距離에서 100km圈내에서 11個所 都合 18個所에 市街地開發区域(衛星都市)이 造成되어 約8,000町步의 工

業團地가 整備되고 人口 約 250萬人을 収容할 수 있게 建設되고 있다.

以上에서 東京의 首都圈整備計劃을 다시 敷衍해 보면 近郊地帶은 開發制限区域으로서 既成市街地의 無秩序한 膨脹, 發展을 抑制하고 그의 健全한 發達을 図謀하기 위하여 바깥둘레에 綠地帶 즉 그린벨트를 設定할 必要가 있는 地域이다. 이地帶에 대하여는 景勝地, 風致地区, 기타 自然環境의 保存, 既成市街地에 不足한 公園綠地의 保存, 충분한 空地 및 公共用地의 確保, 既成市街地 및 開發予定区域의 共同의 利用, 優良農地의 保全등으로 新鮮한 食料品의 供給등을 図謀하게 된다. 또 이地帶의 性格上 大規模의 集團住宅은 原則的으로 建設치 않는다.

다음, 周邊地域은 亂世의 周邊地帶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既成市街地에의 流入 또는 既成市街地로부터의 分散하는 人口 및 產業등을 吸收하고 그들을 定着化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間隔으로 既成市街地를 核으로 한 市街地開発予定区域을 指定하여 그의 育成을 図謀한다. 市街地開発予定区域의 發展은 工場 및 住宅등을 綜合的으로 整備하고 原則적으로 自給自足의 都市로서 發展시킨다. 이때에

市街地開発予定区域과 既成市街地間 및 餘他 市街地開発予定区域相互間을 連結하는 道路, 기타의 交通施設의 整備, 水資源의 確保를 図謀한다.

首都圈內의 都市構成에 대한 基本構想으로서는 帶狀發展形式과 田園都市的 發展形式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道路는 放射線 및 環狀線形으로 構成되는 것과, 母都市 東京의 周邊部 15km의 外周部에 그린벨트를 設置하는 것은 같으나, 工業分散方式, 都市展延의 形態가 帶狀發展形式은 中心母都市에서 放射狀에 帶狀都市的 發達을 하는 것으로 衛星都市否定型이고, 여기에 反하여 田園都市形 發展形式은 放射線道路, 鉄道駅에 따라 中心都市를 形成하고 이들을 中心으로 하여 衛星都市의 으로 展延하는 것이다. 東京의 경우는 現在의 地理的 条

件으로 볼 때, 田園都市形 發展形式이 採擇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즉 韓國의 首都圈計劃과 綠地帶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서울을 중심으로 鐵道와 道路에 따라 市街地를 配置함으로써 市街地發展의 偏向性에 따르고 져 한 点이다. 이런 側面에서 볼 때 서울首都圈計劃도 Finger Plan (手指型計劃)의 一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重點을 둔 것은 모든 손가락의 規模를 同一한 것으로 하지 않고, 工業立地 기타를勘案하여 서울~素砂~仁川을 最大指로, 서울~安養~水原~烏山을 次大指로 하였고 이외에 京義線沿辺에 서울~元堂~金村~汶山, 京元線沿辺에 서울~議政府~東豆川, 中央線에 따라 서울~複合都市~楊平등 몇개의 小指들을 配置하였다.

둘째, 그러나 亂世計劃이나 東京圈計劃의 長點을 살려 田園都市的 性格도 加味하였다. 즉 鐵道나 道路에 따라 無作定 그 發展을 促進한다면 工業立地에 의한 公害 기타 災害對策을 講究할 수 없고, 또 市街地의 連坦이 日本의 阪神圈에서 보는 바와 같이 居住環境을 극히 汚害할 憂慮가 있으므로 都市와 都市間에 상당한 空間距離를 두어 그사이의 自然을 保護하여 綠地로서 市街地와 市街地를 遮断할 것을企図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를 遮断할 것을企図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意圖도 서울~素砂~仁川間의 最大指는 京仁特定地域으로서 우리나라 工業의 中枢地일 것이므로 空間의 最大限 利用을 위하여 連坦市街地化를 어느 程度勘耐해야 할 것으로 計劃되었다. 특히 広州, 龍仁, 發安, 爵子, 半月, 汶山 金村, 東豆川, 新邑(抱川), 楊平, 桂陽, 陽谷, 金浦, 江華등의 諸都市는 新開發衛星都市 또는 小單位地域中心都市로서 亂世計劃이나, 東京圈計劃의 郊外都市에匹敵하는 性格을 가지게 될 것이다.

셋째 日本의 首都圈計劃이 大伦敦計劃에 바탕을 두고 理想에 치우친 結果, 既成市街地에 접한 近郊地帶를 綠地帶로 할 것을 計劃했음에도 不拘하고, 그地域에의 住居化가 急激하여 綠地의 保存은 고사하고 綠地의 遺滅을 惹起케 한 失敗의 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首都圈計劃에서는 서울地域에 接한 地域計劃区域内를 直接圈으로 하여 이를 計劃의 으로 開發할 目的으로 125萬의 留保人口를 想定하고 向后 20年間의 人口增加趨勢와 投資財源의 確保등에 의한 政策樹立에 適応하여 大規模計劃團地(例컨례 永東地区等)의 造成을 期待하고, 無秩序한 拓大와 綠地의 遺滅을 防止할 것을企図하였다. 이러한 서울首都圈廣域都市計劃의 패턴은 結局 Finger-plan을 主로 하되 大伦敦計劃과 東京圈計劃에서 取한 中心母都市의 分散과 集中緩和, 衛星的 郊外部開発의 패턴을 折衷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린벨트의 主된 機能은 都市의 平面拡散을 防止하는데 있다.

美國은 年間 12억 2천 4백 만평의 農地가 都市의 土地利用과 交通用地로 轉換되고 있으며, 英国은 4천만평의 農土가 우리나라는 1970년 農林部가 集計한 統計에 의하면 年間 3백 만평의 農土가 都市의 土地利用과 公共施設用地로 轉換되고 있다. 이러한 趨勢가 持續된다면 우리나라 生產綠地(田畠)面積中 每年 約 0.5%의 減少現像을 가져올 것이며 10년이면 約 4—5%의 農土의 減少를 招來할 것이다.

이와 같은 明白한 趨勢를 앞에 두고 國土空間의合理的 利用과 保存 및 計劃의 統制가 切実히 要求되고 있다.

첫째 生產的 土地의 潛食的 現像이 뚜렷한 大都市周邊을 어떻게 管理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우리나라 都市計劃法에도 施行令이 정하는 都市周邊에 開發制限区域을 指定할 수 있으며 開發制限区域은 無秩序한 拓散을 防止하고 都市周邊의 自然環境을 保存하여 都市民의 健全한 生活環境을 確保하기 위하여 住宅宅地 造成事業 및 工業地 造成事業과 같이 目的에 違背되는 都市計劃事業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새로이 制定된 施行令에 보다具体的의 統制條項이 明示될 것이 밝혀져 있다.
(都市計劃法 제 21조, 開發制限区域의 指定)

이러한 開發制限区域은 英国에서 이미 施行하고 있는 綠地帶, 그린벨트와 많은 点에서 一致하고 있다. 英国에서 綠地帶는 永久的인 또는 強力한 建築物에 대한 許可가 制限되어 있는 都市周邊, 또는 都市를 둘러쌓고 있는 땅을 뜻한다.

1955년 英国 住宅 및 地方自治省 長官이었던 セン더스(Duncan Sandys)氏의 發表에 의하면 綠地帶設定의 理由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過大한 市街地化의 膨脹을 抑制하고,
둘째 周邊 衛星都市 및 既存都市가 沿接된 大都市에 併合 또는 連坦化됨을 防止하며,
셋째 都市의 自然美와 特性을 保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좀더 具体的의 統制의 内容에 들어 가면 綠地帶는 大部分 私有地로 되어있는바 英国에서 使用하는 綠地帶는 완전히 空地로서의 土地가 아니다. 綠地帶內에도 都市가 있으며, 村落이 있고 綠地帶가 設定되기 전에 既存하던 開發된 市街地들이 残存하고 있다.

그러므로 英国의 綠地帶는 다시 말하여 그냥 두었으면 高密度로 開發될 可能성이 있는 土地를 Low density 住居地으로 統制되어 있는 都市周邊 土地라고 보는 것이 보다 正確한 表現이다. 이런 의미에서 綠地帶는 公園과 다르다. 英国政府가 当面하고 있는 問題는 이와 같은 目的에도 不拘하고 都

市地域이膨胀하고 있다는 点과 私有財産의 保護를 어떻게 調和시킬 것이냐가 두통거리로 되어왔다. 英国에는 緑地帯로 指定된 地区内에 있는 私有地에 대한 補償問題는 두가지 方法이 있다.

첫째 緑地帯内 私有地 所有权者가 緑地帯指定으로 부터 顯著하게 不利益을 가져왔다고 認定되는 경우, 政府에 대하여 買入을 主張할 수 있다. 그러나 實際 住宅 및 地方自治省은 이러한 買入規定에 대하여 대단히 非協助的이다.

土地所有权者가 既存의 利用狀態, 즉 農事를 짓는 사람이 農事를 계속한다든가 緑地帯가 設定될 때 이용하는 機能 그대로 土地를 利用하는 한 政府가 買入을 하지 않는다. 土地所有者가 国家를 相對로 訴訟을 하더라도 都市 및 農村計劃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의 規定에 따라 補償의 基準時點을 第二次大戰 직후의 土地価格으로 補償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緑地帯内에 들어 있는 土地所有者들은 할 수 없이 政府의 施策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統制의 具體的 方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用途地域制와 密度地域制를 동시에 加味시킨 規定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일응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英國이외에도 프랑스에서 實施하고 있는 都市平面拡散의 計劃的 統制方法으로 優先開発地区(Z. U. P.)와 開發予定地区(Z. A. D.)를 指定하고 前者は 開發의 優先順位를 줌으로써 지나친 平面拡散을 抑制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后者は 行政當局의 開發行為로 인한 土地投機을 抑制하고 일체의 民間開發을凍結시키는 地区이다. 이 制度가 프랑스에서 그렇게 成功的이라곤 볼 수 없지만 현재 150개의 優先開発地区가 設定되어 있다.

다음으로 都市周辺地域이외의 地域에 있어서도 生產的 農土를 保存하고 國土空間의 生產性을 向上시키는手段으로 土地等級制를 들 수 있다. 全國의 土地를 非沃土와 自然景觀 및 保存価値를考慮, 開發制限地域과 開發優先地区를 区分하여 团地造成事業이나 道路拡張, 施設物建設에 필요한 公共用地를 可能한 한 土地의 級別이 낮은 地域을 優先적으로 利用하며 土地의 級別이 높은 것은 오히려 農土로서 保存해 나가는 方法이다. 이方法은 日本에서도 都市周辺의 農土를 級別制로 規定하여 第1種, 2種, 3種 등으로 나누고 第3種土地는 都市拡散에 따라 都市区域으로 編入시키고, 第1種과 2種 農土는 都市的 使用에 用途轉換을 抑制하고 있는 것과 같다.

國土空間의 合理的 利用이란 側面에서 볼 때 國土空間을 조그만 땅이나마 將來의 利用을 고려하여 浪費 없는 活用이 要求되며 規制의이며 制度의 인 整備가 現時點에서 時急히 要求된다고 보겠다.

이와같이 都市의 平面拡散을 防止하고 都市周辺의 生產農地를 保護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의 設置는 불가피한 것이라 보겠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都市分散 특히 人口와 機能 및 施設을 分散시키기 위한 一종의 緩衝地帶(Buffer Zone)를 設定하는 것으로 巨大都市에서 넘쳐 흐르는 (Spill over) 된 人口는 이런 地帶밖에 位置한 開發予定区域内의 衛星都市에 収容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都市分散論을 前提로 한 都市計劃上의 手段方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方法이 予測했던 效果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都市周辺의 緑地帯를 점점이 侵蝕해가는 結果만을 갖게 된다. 그린벨트設定 自体보다도 設定에 이어서 派生되는 그린벨트內의 土地管理와 利用 및 行政의인 措置가 더 큰 問題로 擙頭하게 된다.

오늘날까지 都市計劃上 2大 論爭의 焦点이 되

어 온 두가지 論題가 있으나 그중 하나는 都市分散論으로서 巨大都市 否定論者이며 따라서 田園都市를 始發点으로 한 그린벨트設置 主張을 내세우고 있는 者요.

둘째는 都市集中論으로서 巨大都市 肯定論者이며 超高密度의 都市 諸般施設 즉, 街路, 交通機関 建築物, 供給處理施設등을 集約시켜 都市의 平面的 發達을 反對하고 立体的 都市構成을 내세우는 者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上述한 두가지 論題의 長短点을 比較 檢討해야 할 것이나, 代表的인 都市集中論의 表現이라 할 수 있는 美国 뉴욕市의 都市構成을 볼 때 결코 賛成할 수 없는 여러가지 現像들을 들

을 수 있는 바, 특히 超高層建築群으로서 形成되는 環境의 惡化 즉, 交通, 日照, 日射, 通風 등의 問題와 人工的 施設物에 둘려 빵여 自然과 隔離된 채 生活을 嘗為해 나가는 都市民들의 生活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斷定할 수 있는 것이며, 그뿐아니라 都市公害(Public Nuisance)의 增加와 自動車交通에 縁由하는 人間의 空間의 消滅은 우리가 바라는 都市像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各種 都市問題를 惹起시키는 人口過密狀態에 있는 現在 巨大都市들을 다루는 広域的手法으로서 그린벨트는 絶對 必要한 것이나, 그代身 그린벨트의 設定으로 말미암아 派生되는 私權制限과 行政管理問題를 慎重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끝)